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절차 안내

◈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시행(6.14)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고시 제정 전까지의 평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1. 시범운영 기간 및 대상

- □ (기간) 「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(고시)」 제정* 및 대행자 지정 공고일까지
 - *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, 대행자 지정 요건 등을 규정, 現 규제심사 중
- □ (대상) ① 신규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
 - ❷ 현재 10MW 미만 사용 중이나 추가적인 용량 증가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
 - ※ 분산법 시행일(6.14) 기준 전기사용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대상 (전기사용신청 후 회신 받은 경우 포함). 단, 기존 신청 진행 단계에 따라 검토 우선순위 차등

2. 시범운영 절차(개요)



□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작성

○ 계통영향사업자는 「**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**」 **행정예고(안)**(산업부 공고 2024-436)을 기준으로 **평가서 작성**

기술 평가항목

- ① 사업자는 '전력공급 여유', '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', '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' 항목 검토를 위한 [붙임] 서식 제출 (사업자→산업부)
- ②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에 해당 항목 평가를 위한 계통검토 요청 후, 한국전력공사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회신 (한전→산업부→사업자)
- **③** 기타 기술평가 항목은 **사업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**

非기술 평가항목

○ 「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**행정예고(안)** 및 '비기술 평가항목 작성 지침서'를 참조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작성

②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

○ 작성된 **전력계통영향평가서 및 첨부 문서**를 **산업부에 제출** (전자문서 1부, 인쇄·제본된 문서 30부)

<참고>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제출 서류 목록 (행정예고(안) 참조)

- 1. 요약문
- 2. 사업의 개요
- 3. 수전 변전소 선정
- 4. 평가항목별 평가내용, 근거자료 및 득점
- 5. 종합평가 및 결론
- 6. 전력계통영향평가표 (별지 1호 서식)
- 7. 부록
 - 가.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
 - 나. 사업 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 법령
 - 다.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
 - 라.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

③ 평가서 심의

제출된 평가서는 한국전력공사의 검토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
거쳐 심의 결과 회신



※ 신청서 및 평가서 제출방법

- (시범운영 신청서식) 전자문서(pdf) 또는 원본 1부 제출
- (전력계통영향평가서) 전자문서(pdf) 형식의 평가서 1부와 인쇄·제본된 문서 30부 제출
- ※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powergrid01@korea.kr
-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박종호 주무관(044-203-3937)

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 김재연 차장(061-345-5062)

붙임

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신청서식

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신청서식

※ 바탕색이 어	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	
접수번호	접수일자	담당부서
	회사명 또는 상호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	
신청인	주소	전화번호
		휴대전화
	e-mail	팩스번호
전력수전 기	ㅐ요 (예시 22.9kV 22,000KVA)	
수용가명 (예시 세종 에너지 컴플렉스 개발사업)	
수용장소 (예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)	
예상소요 전	<mark>던력 (예시 연구시설 22.9kV 11,000KVA 1회선, 상업시설</mark>	22.9kV 11,000kVA 1회선)
전력사용 용	용도 (예시 연구시설 / 상업시설)	
공급방식 전	선압 (예시 22.9kV / 용도별 1회선)	
전력수전 저	디점 (예시 사업부지내 22.9kV 각 용도별 전기실)	
전력사용 여	예정일 (예시 2027년 상반기, 전력사용 년 월	당 예정일 변경 가능) 일
수전설비 니	내용(설비용량 등) (예시 22.9kV 전력공급, 변압기	
기존 한국전	¹ 력공사와의 전기사용 관련 진행상황(해당 상황에 √표시	
	전력수전예정통지 시행 □ 전력수전예정통지에	대한 공급방안(공급가능) 회신
	전기사용신청 시행 □ 전기사용신청에 대한	공급방안(공급가능) 회신
※ 단 한국	R전력공사로부터 공급불가(거부,반려) 회신을 받은 경우	는 미표기
	활성화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	
	에 대한 전기 공급 이후 전력계통설비가 과부하 없이 부	
2 전력계	통설비에 발생하는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전력설비 보	강에 따르는 시간·비용 정도
❸ 전력계	통이 전압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	
관련 자료를	를 신청합니다.	
		년 월 일
	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산업통성	상자원부 장관 귀하	(10 42 2)
신청인 제출서류	1. 기존에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 관련 진행상황을 증명하	는 서류 각 1부
	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로 우편 또는 전자우	 년(powergrid01@korea.kr) 송부

- 3 -

참고

전력계통영향평가 시범운영 평가 기준

□ 상세 배점 산정방법은 행정예고 「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」참조

[별표 1] 평가항목별 배점

평가 항목			배점	
	전력공급 여유		25	
	전력공급	여유 확보 난이도	20	
-1 & - 1	적정전인	압 유지 가능 여부	가능/불가	
기술적	전력공급 영향	자가 발전 운전 계획	10	
평가항목	최소화 방안	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	5	
	(가점) 부지제공을	통한 공급능력 확보 기여 여부	5	
	(감점) 적	덕정전압 신청 여부	-15	
	지역사회 수용성		6	
	사업 안정성		7	
	지방재정기여도		6	
비기술적 평가항목	사어 하셔하 중기	부가가치 유발 효과	6	
	전합 철정의 표피	직접고용 효과	6	
	지역낙후도		5	
	전력자립도		4	
	(가점 1) 해당지역 지원사업		5	
	(가점 2)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		5	
	총점 ¹⁾			

- 1) 적정전압 유지가 가능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평가서는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대상으로 상정 가능. 단,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전력을 증가하고 자 하는 경우 총점 40점 이상 시 상정 가능
- 2) 기술적 평가항목은 60점, 비기술적 평가항목은 40점으로 하되 총합은 100점을 상회하지 못함

[별표 2] 전력공급 여유 배점 ⇒ 임시 운영방안으로 한전이 검토의견 작성

부하율	100%	110%	120%	130%	140%	150%	150%
	미만	미만	미만	미만	미만	미만	이상
배점	25	21	17	13	9	5	0

^{*} 전기 공급 이후 상정고장 시의 설비별 부하율 중 가장 높은 부하율을 적용. 단, 정상 상태의 설비별 부하율이 100% 이상인 경우 0점

^{* 154/23}kV 변압기의 부하율이 100% 이상인 경우 0점

[별표 3] 전력공급 여유 확보 난이도 배점 ⇒ 임시 운영방안으로 한전이 검토의견 작성

전력공급		기존 설비를 활	용한 여유 확보		
여 유	설비보강 불필요 ¹⁾	단순 보강 ²⁾	추가시공이	70·154kV 설비 신설	345kV 이상 설비 신설
확보방안		tt 40	필요한 공사 ³⁾		
배점	20	15	10	5	0

- 1) 최종규모 내 변압기 증설은 보강 불필요로 분류
- 2) 변전소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
- 3) 용량증대 전선교체 공사

< 이하 항목은 임시 운영방안으로 신청자가 직접 수행 >

[별표 4] (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배점) 자가 발전 운전 계획

세부 항목	배점
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50% 이상	10
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40%~50% 미만	8
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30%~40% 미만	6
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20%~30% 미만	4
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10%~20% 미만	2
자가 발전원 용량이 계약전력의 10% 미만	0

[별표 5] (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배점) 전력 사용 효율화 계획

세부 항목	배점
xEMS, ESS 설치계획이 구체적임	5
xEMS 또는 ESS 설치계획이 구체적임	3
설치계획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	0

* 사업의 구체성(사업 내용, 추진 일정, 소요 비용 등), 실현 가능성, 설치 지연요인 및 대처방안 적정성을 판단하여 설치계획의 구체성을 평가

[별표 6] 적정전압 신청 여부 배점

○ 계약전력별 적정전압

계약전력	적정전압	배점
10MW 이상 ~ 40MW 이하	22.9kV 또는 154kV	
40MW 초과 ~ 400MW 이하	154kV	15
400MW 초과 ~ 600MW 이하	154kV 또는 345kV	-15
600MW 초과 ~	345kV	

[별표 7] 지역사회 수용성 배점

세부 항목	배점
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	
가. 해당 사업지역 소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포함된 공문이	
확보된 경우	
나. 해당 사업지역 소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포함된 공문이	
확보된 경우	6
다. 해당 사업이 사업지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	
및 이에 준하는 문서에 포함된 경우	
라. 해당 사업이 사업지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	
및 이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	
해당 없음	0

[별표 8] 사업 안정성 배점

세부 항목	배점
다음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	
가. 자기자본 비율 30% 이상 또는 최근 2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	
업비 대비 총사업비 70% 이상인 경우	'
나.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	
다음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	
가. 자기자본 비율 30% 이상 또는 최근 2개년도 동종업계의 평균 사	
업비 대비 총사업비 70% 이상인 경우	3
나. 사업주의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	
해당 없음	0

[별표 9] 지방 재정 기여도 배점

세부 항목	배점
향후 20년간 평균 0.1% 이상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	6
향후 20년간 평균 0.03% 이상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	3
향후 20년간 평균 0.03% 미만의 지방 세수 확보 예상	0

[별표 10] (산업 활성화 효과 배점) 부가가치 유발 효과

세부 항목	배점
파생되는 부가가치가 2천억 원 이상	6
파생되는 부가가치가 2천억 미만 1천억 원 이상	3
파생되는 부가가치가 1천억 원 미만	0

[별표 11] (산업 활성화 효과 배점) 직접고용 효과

세부 항목	배점
직접고용이 300명 이상 발생	6
직접고용이 100명 이상 발생	3
직접고용이 100명 미만 발생	0

[별표 12] 지역낙후도 배점

세부 항목	배점
지역낙후도 지수 0.2 미만	5
지역낙후도 지수 0.2 이상 0.8 미만	2
지역낙후도 지수 0.8 이상	0

[별표 13] 전력자립도 배점

세부 항목	배점
해당 지역 전력 발전량/판매량 비율 150% 이상	4
해당 지역 전력 발전량/판매량 비율 50% 이상 150% 미만	2
해당 지역 전력 발전량/판매량 비율 50% 미만	0

[별표 14] 해당지역 지원사업 배점 및 지원사업 종류

○ 해당지역 지원사업 배점

세부 항목	배점
해당지역 대상의 지원사업 규모가 총 사업비의 5% 이상	5
해당지역 대상의 지원사업 규모가 총 사업비의 3% 이상	2
그 외의 경우	0

○ 해당지역 지원사업 종류

사업 종류	세부 내용
소득증대사업	농림수산업시설, 상공업시설, 관광산업시설, 축산업시설 및 소규모 발
	전시설(태양광 등)의 설치・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
	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공공・사회복지사업	의료시설, 도로시설(교통수단 포함), 항만시설, 상하수도시설, 환경·
	위생시설, 방사능방재시설, 휴양시설, 운동·오락시설 및 전기·통신
	시설 등을 건립·운영하는 사업, 습지조성,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
	복원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
	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
육영사업	교육 기자재 및 통학・숙식 지원, 학자금・장학금 지급 및 교육・문
	화 관련 시설 건립ㆍ운영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
	·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주민복지지원사업	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
	·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, 정보·통신비 등의 일정액
	을 보조하는 사업
기업유치지원사업	기업의 유치 및 설립・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
	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전기요금보조사업	「전기사업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
	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
그 밖의 지원사업	해당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지원사업

[별표 15] 특별법 지원사업 대상 여부 배점

세부 항목	배점
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	5
특별법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0